

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교관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통계청 상주사무소에서는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교관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. 8. 22.

통계청 상주사무소장

1 채용 인원 및 계약 기간

지역	채용 구분	채용 인원	계약 방법	계약기간	비고
상주시 문경시 예천군	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원)	1명	근로계약	2025.9.4. ~ 2025.12.31.	

※ 위 내용(계약기간 및 채용일정 등)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2 담당 업무

구분	주요 담당업무
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원/근로계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가구·농어업부문 경상조사 및 현장조사 업무 수행· 방문조사 조사표 작성·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보완, 시스템 입력· 농림어업총조사 교관 업무 지원 및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

※ 위 내용(담당업무)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3 근로조건 및 보수

- 근로시간 및 형태: 주 5일제(40시간), 1일 8시간(9~18시) 근무
- 보수: 채용일수(주휴 및 유급휴일 포함) X 일급(80,240원/1일 기준)

※ 복무일반: 기간제근로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관계법령 및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반사항을 따르되, 해당사업별 별도로 정한 세부기준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준수함.

4

응시 자격 요건(모두 충족)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
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(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호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
5

채용 방법

□ 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- 자기소개서 내용 및 경력 등을 평가하여 합격자 결정

□ 2차 면접전형 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□ 최종합격자 선정

- 최종점수가 높은 자
-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□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
○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

심사 일정

- 서류전형(1차) 심사: 2025. 9. 1.(월) 9:20 ~
 -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 공고: 2025. 9. 1.(월) 16시 이후
 - 면접전형(2차) 심사: 2025. 9. 2.(화) 9:30~
 - 최종합격자 공고: 2025. 9. 2.(화) 16시 이후
 -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 (<http://kostat.go.kr>) 공지사항에 공고
- ※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업무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7

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8. 22.(금) ~ 2025. 8. 29.(금) 18:00까지
- 모집공고
 - 통계청 홈페이지(<http://kostat.go.kr>) 채용정보 공지
 - 상주시청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) 채용정보 공지
- 접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연락처
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	곽민승	경북 상주시 남성3길 22 2층 사무실	전화번호: 054-530-6515 이메일: mins216@korea.kr

* 이메일 접수자는 접수 여부를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필수

- 접수방법
 -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 - 방문접수: 평일 9:00 ~ 18:00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 -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모두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 - 접수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
8

제출 서류

- (필수) 응시원서 1부[붙임1], 자기소개서 1부[붙임2]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[붙임3]
- (필수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이중취업 확인용)
- (선택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)[붙임4]
- (선택)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붙임5]
- 추가 서류제출(해당자에 한함)

※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평가대상에서 제외

<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>
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[붙임4](선택사항)
 - *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
(국가기술자격증, 장애인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국가유공자확인원,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)
 - *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(스캔하여 첨부 등) 할 수 있음

※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
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9

유의 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, 계약서에 명시된 본조사 중 중도 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금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

【붙임 1】 (필수) 응시원서

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

업무명	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교관 업무 지원	분 야	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원)	응시번호		
사 진 (3.5cm x 4.5cm)	성 명 (한글)			성 별		
				생년월일		
	연락처	전화번호	() -			
		주 소				
e-mail						
일 반 경력사항	기 간	근 무 처	담당업무 내용			
	~					
	~					
통계청 경력사항	기 간	근 무 처	담당업무 내용			
	~					
	~					
자 격 사 항	구분	자격증명	등록번호	취득일자	시행처	
	전산 관련					
	기타					
기 타	저소득층 <input type="checkbox"/>		국가유공자 <input type="checkbox"/>	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		
	다자녀보육 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		북한이탈주민 <input type="checkbox"/>			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				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						
2025년 월 일						
성 명 : (서명)						

- 주 1] 분야에는 [조사관리자, 업무보조원, 입력·내검요원 등] 기재
2]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3]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붙 임 : 관련 증명서류(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, 국가유공자 증빙서류,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, 자격증 등)

【붙임 2】 (필수) 자기소개서

자 기 소 개 서

조사명	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교관 업무 지원	분야	기간제근로자(통계조사원)
성명		전화	

※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※ 지원동기 및 포부, 강점 등 자유롭게 1페이지 이내로 작성

【붙임 5】 (해당자만 제출)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